



2012년 12월

유학생 비자

아래의 서류를 본인이 직접 독일대사관 영사과에 제출하도록 한다.

- 빠짐없이 기재 및 서명이 된 **비자신청서 2부**
- 유효한 **여권**(인적사항이 기재된 페이지 사본 2부 첨부)
-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된 백색배경의 **여권사진 2매**(3,5 x 4,5 cm)
- 독일 **대학입학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**(일반적으로 졸업증명서 및 수능성적증명서)
- 1. 재정보증서 또는
2. 장학금 수혜서 (장학금 수혜서에는 1년 동안 최소 월 659유로, 총 7908유로가 지원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) 또는
3. **슈페어콘토('슈페어콘토' 안내문 참조)**
- 최종학력증명서**
- 독일대학의 **입학허가서**
- 독일어 능력 증빙서류 또는 어학원 등록서

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.

주의사항:

유학생비자가 있을 시 1년에 90일(전일) 또는 180일(반일)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. 또한, 대학교나 다른 학술기관에서의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.

배우자 또는 16세 이하 자녀가 동반하는 것은 허용된다. 비자신청에 관련된 제출서류 정보는 '가족동반 비자' 안내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.

제출한 서류가 완전하게 갖추어졌을 시 수속기간은 약 4주 소요된다.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오래 소요될 수도 있다. 이를 참고하여 서류 신청을 미리 하도록 한다.

유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이다. 입국 후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관할 외국인청에서 유학을 위한 체류허가서를 신청하도록 한다.

비자신청 수수료는 **60 유로**이며, 신청 시 이를 **원화(현금)**로 지불해야 한다.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신청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는다.

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했다고 해서 비자가 반드시 발급된다는 보장은 없다.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독일의 관할기관과 함께 이를 검토하고 발급여부를 결정한다.